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공인중개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부동산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,

임대인이 임대차신고 회피, 임대소득 과소 신고를 위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하는 등 정당한 관리비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,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대해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 중개의뢰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00. 00. ~ 2023. 00. 00.) 결과, 특기할
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10호에서 제13호는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.

제21조제1항제3호 중 “거래예정금액”을 “거래예정금액·관리비”로 하고,
같은 항에 제10호부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
관한 사항
11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8조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
관한 사항
12.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
교부에 관한 사항
13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
보증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)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·설명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u><단서 신설></u> 1. 2. (생략) 3. <u>거래예정금액·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</u> 4. ~ 9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1조(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) ① ----- ----- -----. 다만, 제10호에서 제13호는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에만 적용한다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거래예정금액·관리비</u> ---- ----- 4. ~ 9. (현행과 같음) 10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 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에 관한 사항 11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8조 에 따른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 호에 관한 사항 12 「주민등록법」 제29조의2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 는 교부에 관한 사항 13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 별법」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 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412